

「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」 검 토 보 고 서

본 기금운용계획안은 2020년 11월 2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.

I. 제안이유

- 2021년도 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을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고 평창군의회 심의 의결을 받으려 하는 것임.

II. 주요내용

- 2021년도 평창군기금조성 규모는 총 7개 기금 13,82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,925백만원이 감소하였음.
- 기금조성규모는 다음과 같음.

(단위:천원)

기 금 명	2020년도말 조 성 액①	2021년 운용계획		2021년도말 조 성 액 ④=①+②-③	증 감 ⑤=④-①
		수입 ②	지출 ③		
합 계(7건)	15,748,308	1,793,242	3,719,043	13,822,507	△1,925,801
통합재정안정화기금	6,260,152	93,783	873,752	5,480,183	△779,969
체육진흥기금	4,267,147	44,298	635,000	3,676,445	△590,702
식품진흥기금	125,117	51,038	50,291	125,864	747
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 지원기금	209	60,031	60,000	240	31
재난관리기금	1,418,740	1,021,635	1,200,000	1,240,375	△178,365
옥외광고발전기금	103,321	17,018	0	120,339	17,018
농축산물가격 안정기금	3,573,622	505,439	900,000	3,179,061	△394,561

Ⅲ. 기금개요

□ 기금조성규모

-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」과 개별법에 따라 설치 및 관리·운용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으로 2021년도 기금조성규모는 **13,823백만원**으로 전년대비 **1,925백만원** 감소.

□ 기금운용계획총괄

- 2021년도 수입·지출계획은 총 **6,907백만원**이며
 - 수입은 전입금 1,560만원, 보조금 36만원, 예탁금 원금회수 1,634백만원, 예치금회수 3,480백만원, 이자수입 168백만원, 기타수입 29백만원이며,
 - 세출은 비용자성사업비 2,845백만원, 예치금 3,188백만원, 예수금원리금상환 874백만원 임.

□ 기금별 운용계획

가. 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(기획실)

- 설치목적 :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재정용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자금용자(존속기한 2024.12.31.)
- 기금운용계획
 - ▶ 수입·지출계획

(단위:천원)

수입계획		지출계획	
항 목	수입액	항 목	지출액
합 계	1,051,451	합 계	1,051,451
예탁금원금회수	802,474	예치금	177,699
예치금회수	155,194	예수금원금상환	831,540
이자수입	93,783	예수금이자상환	42,212

- ▶ 수입은 예탁금 원금회수 **802백만원**, 예치금회수(전년도이월금) **155백만원**, 이자수입 **94백만원**이며,
- ▶ 지출은 예치금 **177백만원**, 체육진흥기금, 식품진흥기금,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**874백만원** 임.

나. 평창군체육진흥기금(교육체육과)

○ 설치목적 : 평창군 체육진흥 (존속기한 2023.10.16.)

○ 기금운용계획

▶ 수입·지출계획

(단위:천원)

수입계획		지출계획	
항 목	수입액	항 목	지출액
합 계	1,506,155	합 계	1,506,155
예탁금원금회수	805,290	비용자성사업비	635,000
예치금회수	656,567	예치금	871,155
이자수입	44,298		

▶ 수입은 예탁금원금회수 805백만원, 예치금회수(전년도이월금) 657백만원, 이자수입 44백만원이며

▶ 지출은 체육인의 밤 사업에 30백만원, 2021금강대기 전국중학교 축구대회 개최 230백만원, JS컵 청소년 축구대회 75백만원, KBS배 전국레슬링대회 180백만원, 평창 평화장사씨름대회 120백만원, 예치금 871백만원 임.

다. 평창군식품진흥기금(환경위생과)

○ 설치목적 :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(법정기금)

○ 기금운용계획

▶ 수입·지출계획

(단위:천원)

수입계획		지출계획	
항 목	수입액	항 목	지출액
합 계	149,905	합 계	149,905
보조금	36,700	비용자성사업비	50,291
예탁금원금회수	26,250	예치금	99,614
예치금회수	72,617		
이자수입	1,338		
기타수입	13,000		

▶ 수입은 보조금 36백만원, 예탁금원금회수 26백만원, 예치금회수(전년도이월금) 73백만원, 이자수입 1백만원, 과징금 13백만원 임.

- ▶ 지출은 지역대표음식홍보 15백만원, 으뜸음식점 인센티브 지원 외 5개 사업에 30백만원, 과징금 강원도 분할금 5백만원, 예치금 99백만원임.

라.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(환경위생과)

- 설치목적 :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복리증진, 소득향상 및 건강검진 비용 지원(법정기금)

- 기금운용계획

- ▶ 수입 · 지출계획

(단위:천원)

수입계획		지출계획	
항 목	수입액	항 목	지출액
합 계	60,240	합 계	60,240
전입금	60,000	비용자성사업비	60,000
예치금회수	209	예치금	240
이자수입	31		

- ▶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60백만원이며
- ▶ 지출은 주민지원사업 등 60백만원 임.

마. 평창군재난관리기금(안전교통과)

- 설치목적 : 재난 예방 및 응급조치(법정기금)

- 기금운용계획

- ▶ 수입 · 지출계획

(단위:천원)

수입계획		지출계획	
항 목	수입액	항 목	지출액
합 계	2,440,375	합 계	2,440,375
전입금	1,000,000	비용자성사업비	1,200,000
예치금회수	1,418,740	예치금	1,240,375
이자수입	21,635		

- ▶ 수입은 전입금 1,000백만원, 예치금회수(전년도이월금) 1,419백만원, 이자수입 21백만원이며

- ▶ **지출**은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300백만원, 응급복구 자재구입 100백만원, 재난·재해예방사업 700백만원, 부착제설기 구입 100백만원, 예치금 1,240백만원 임.

바.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(도시과)

- 설치목적 :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지원(법정기금)

- 기금운용계획

- ▶ 수입·지출계획

(단위:천원)

수입계획		지출계획	
항 목	수입액	항 목	지출액
합 계	120,339	합 계	120,339
예치금회수	103,321	예치금	120,339
이자수입	1,370		
기타수입	15,648		

- ▶ **수입**은 예치금회수(전년도 이월금) 103백만원, 신고수수료 16백만원, 이자수입 1백만원이며,
- ▶ **지출**은 예치금 120백만원임.

사. 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(유통산업과)

- 설치목적 : 농가 등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해당 가격 안정과 유통산업의 활성화(존속기한 2024.12.31.)

- 기금운용계획

- ▶ 수입·지출계획

(단위:천원)

수입계획		지출계획	
항 목	수입액	항 목	지출액
합 계	1,579,061	합 계	1,579,061
전입금	500,000	비용자성사업비	900,000
예치금회수	1,073,622	예치금	679,061
이자수입	5,439		

- ▶ 수입은 전입금 500백만원, 예치금회수(전년도이월금) 1,074백만원, 이자수입 5백만원이며
- ▶ 지출은 농축산물 가격하락 보상금 900백만원, 예치금 679백만원임.

IV. 검토의견

- 2021년도 기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및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총 7개를 운용할 계획으로, 조성규모는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1,925백만원이 감소한 13,823백만원 임.
- 2021년도말 조성액을 각 기금별로 보면
 - 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5,480백만원
 - 평창군체육진흥기금 3,677백만원
 - 평창군식품진흥기금 126백만원
 -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24만원
 - 평창군재난관리기금 1,240백만원
 -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 120백만원
 - 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3,179백만원 임.
-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총 6,907백만원으로
 - 수입은 예치금 회수가 3,480백만원(50.4%)
 예탁금 원금회수가 1,634백만원(23.7%)
 전입금이 1,560백만원(22.6%), 이자수입 168백만원(2.4%)
 보조금·기타수입 등이 65백만원(0.9%)이며,
 - 지출은 예치금이 3,188백만원(46.2%),
 2021금강대기 전국중학교 축구대회 등 4건의 체육진흥사업,
 으뜸음식점 지원외 5건의 식품진흥사업, 폐기물처리주변지역
 주민지원사업,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, 농축산물 가격하락
 보상금 등의 비융자성사업비가 2,845백만원(41.2%),
 예수금원리금상환이 874백만원(12.6%)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.

○ 전년도(2020년)까지 존속했던 사회복지기금의 경우

- ▶ 지속적인 금리 인하로 더 이상 기금 적립금 발생수익금으로는 목적사업 수행에 한계가 있으며,
- ▶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

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므로,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5조(기금의 통합·폐지)에 의거하여
기금의 폐지를 결정하고,
「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조례」 폐지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.

그 밖에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.

【관계법령】

□ 지방자치법

- 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- ③ 제1항에서 "재산"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-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-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15조(기금의 통합·폐지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·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
1.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
2.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
3.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
4.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